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-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-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4. 5. 3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



		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업데이 트	- -	<u>2024. 4. 21. 기준</u> <u>2024. 3. 29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</u>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습니다.</u> 따라서 투자원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 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 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 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 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	[주식 부책임용인력] <u>오대식</u> (2020.01.09~2021.03.18)	[주식 부책임용인력] <u>(삭 제)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 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 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 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u> (생략)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 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 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습니다.</u> (생략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 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변경	<u>표준편차 : 5.95%</u> (신설)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(97.5% VaR 모형 사용 : 13.88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<u>2024.5.3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"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"에서 "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"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미 기준가격	기업공시서식 개정사 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 (신설)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

적용기준 나. 환매			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 -	<u>2024. 4. 21. 기준</u> <u>2024. 3. 29.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21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